

제335회 임시회  
2014. 10. 24.(금)

# 심 사 보 고 서

○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2014. 10. 24.(금)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4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4년 10월 7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10월 15일

- 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최정옥)

가. 제안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8년 10월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토지를 매각하던 중 일부 토지가 2009년 12월 첨단복합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 첨단복합단지 사업시행자인 우리도가 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 재산의 취득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매입》

- 위치 :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648-3번지 외 4필지
- 사업기간 : 2015. ~ 2018.
- 매입방안 : 4년 균등 분할상환
- 매입규모 : 5필지 63,391.5m<sup>2</sup>(19,175평), 9,913백만원

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 (천원)	용도	비고
		m <sup>2</sup>	평			
계		63,391.5	19,175	9,913,163		
오송 연제 648-3	대	4,623.2	1,398	722,976	연구시설 부지	LH소유
오송 연제 682	대	14,545.3	4,400	2,274,594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	”
오송 연제 682-1	대	14,710.9	4,450	2,300,491	”	”
오송 연제 682-2	대	14,833.9	4,487	2,319,725	”	”
오송 연제 682-3	대	14,678.2	4,440	2,295,377	”	”

###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본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2009년부터 의료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 및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 2015년도 정기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47 호	일
----------	--------	---

제출연월일 : 2014년 10월 2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8. 10월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토지를 매각하던 중 일부 토지가 2009. 12월 첨복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 첨복단지 사업시행자인 우리도가 첨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내용

### □ 재산의 취득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매입》

- 위 치 :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648-3번지 외 4필지
- 사업기간 : 2015. ~ 2018.
- 매입방안 : 4년 균등 분할 상환
- 매입규모 : 5필지 63,391.5m<sup>2</sup>(19,175평), 9,913백만원

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 (천원)	용도	비고
		m <sup>2</sup>	평			
계		63,391.5	19,175	9,913,163		
오송 연제 648-3	대	4,623.2	1,398	722,976	연구시설 부지	LH소유
오송 연제 682	대	14,545.3	4,400	2,274,594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	"
오송 연제 682-1	대	14,710.9	4,450	2,300,491	"	"
오송 연제 682-2	대	14,833.9	4,487	2,319,725	"	"
오송 연제 682-3	대	14,678.2	4,440	2,295,377	"	"

###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1건	63,391.5	9,913,163				
	건물							
	기타							
1	토지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648-3번지 외 4필지	63,391.5	9,913,163	2018.12	첨복단지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확보	한국토지 주택공사	매입
	건물							
	기타							
2	토지		이	하	여	백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 관계 법령 발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li> <li>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li> </ol> </li> <li>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li> <li>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li> </ol> </li> </ol>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b>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b>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b>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b>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li> <li>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li> <li>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li> <li>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li> <li>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li> </ol>